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31 발의연월일: 2020. 11. 25.

발 의 자:이명수·장제원·성일종

김희국 • 태영호 • 최춘식

윤상현·홍문표·강기윤

박덕흠 • 김예지 • 김형동

최연숙 · 최형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 및 통은 각각 읍·면과 동에 설치하여 지방행정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리와 달리 통은 동의 하부 조직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고 있어, 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근거를 통장에 대한 근거와 함께 법률로 상향 명시함으 로써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개정, 제1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동·리"를 "행정동"으로, "하부"를 "통 등 하 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8조의2(이장·통장의 임명 등) ①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인 통 에는 통장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장·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이장·통장의 임무, 자격,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당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 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 -----운영상 동 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이하 "행정동"이라 한다) • 리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이하 "행정리"라 한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 ⑤ 행정동-----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통 등 하부----. <신 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118조의2(이장·통장의 임명 등) ①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동 의 하부 조직인 통에는 통장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장·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 다.
-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 에 따라 이장·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 ④ 그 밖에 이장·통장의 임무, 자격,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 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당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